

속기사법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00
----------	-------

발의연월일 : 2025. 9. 18.

발 의 자 : 박수현 · 조인철 · 양부남
이개호 · 서삼석 · 임오경
한정애 · 김영배 · 김준혁
윤종오 · 이정문 의원
(11인)

제안이유

속기란 음성 언어를 특정 부호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뒤, 이를 문자 언어로 바꾸는 기록방법으로, 일반 문자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말의 속도를 기록할 수 있는 특수 문자 체계임.

속기사는 ‘현대판 사관’, ‘기록의 마술사’로 불리며,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기록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록이 곧 역사다”라는 인식 아래 80년 헌정사를 기록해 오면서 왜곡 없는 정직한 역사를 남긴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해 왔음.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기술의 발전, 그에 따른 기록의 신속·정확성 등의 요구로 속기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현재의 대한속기협회 조직으로는 속기사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 그리고 속기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속기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속기사의 자격과 역할을 명확히

하며, 속기문화의 연구와 보급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속기 사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한글을 바탕으로 한 속기사제도를 확립하여 속기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속기사는 공공기관(입법, 사법, 행정기관 등)과 장애인을 위한 자막 작성,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등의 속기 업무를 수행함(안 제3조).
- 다. 속기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기사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하고 속기 및 속기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안 제4조).
- 라. 속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속기사 자격이 있으며 속기사 자격시험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고, 속기사 자격의 취득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속기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마. 속기사(속기법인 포함) 자격이 있는 자가 속기업무에 종사하려면 대한속기사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대한속기사회는 업무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함.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 거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음(안 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 바. 속기사는 업무에 관하여 그 업무를 의뢰한 자로부터 정당한 보수

를 받고 그 외에 의뢰인이나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함(안 제25조).

사. 속기사는 자신이 직접 작성하거나 보정한 속기록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진정성을 확인한 후 이에 서명하여야 하며 서명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음(안 제26조).

아. 속기사제도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인 ‘대한속기사회’를 둠(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자. 속기사는 5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 등 새로운 속기제도 습득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32조 및 제33조).

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속기사의 신뢰성 및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속기사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안 제34조).

속기사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글을 바탕으로 한 속기사제도를 확립하여 속기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속기”란 음성 등의 소리 정보를 부호 또는 기계 등을 사용하여 기록한 후 오류를 교정하거나 보정하여 문자정보로 바꾸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2. “공인속기사”(이하 “속기사”라 한다)란 제6조에 따른 속기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른 대한속기사회에 가입하여 속기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속기록”이란 속기사가 회의, 재판, 심문 등의 발언 내용을 속기한 기록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5. “서명”이란 속기사가 본인이 작성한 속기록의 진정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신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업무) 속기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요 회의의 회의록 및 속기록 작성
2. 국회·지방의회에 있어서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의 의사(議事)에 대한 속기
3.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경찰 등 사법 절차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군사법기관을 포함한다)이 조사, 수사 과정에서 작성하는 것으로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속기록 및 녹취록의 작성과 공판정 또는 이에 준하는 심판정에서 변론·증언·진술 등 재판이나 심판내용을 기록하는 속기록의 작성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폐쇄자막 및 화면해설 자막의 작성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회사의 주주총회 속기록의 작성
6. 다른 법령에서 속기를 규정하거나 속기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의 기록작성
7.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관한 기록의 작성

제4조(속기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속기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에 따른 속

기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속기사가 아닌 사람은 속기, 속기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속기사의 자격과 시험

제5조(속기사의 자격) 제6조에 따른 속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속기사 자격이 있다.

제6조(속기사 자격시험) ① 속기사 자격시험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속기사 자격시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속기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 그 밖의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속기사자격심의위원회) ① 속기사 자격의 취득과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속기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둔다.

1. 속기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속기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속기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속기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속기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속기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 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속기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제3장 속기사의 업무등록

제10조(등록 등) ① 속기사(제15조에 따른 속기법인을 포함한다) 자격

이 있는 사람이 제3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대한속기사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제28조에 따른 대한속기사회는 업무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28조에 따른 대한속기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속기사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障害)로 속기사의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8조에 따른 대한속기사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대한속기사회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거부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소명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제28조에 따른 대한속기사회에 그 속기사의 등록을 명하

여야 한다.

제11조(업무등록증의 대여 금지) 속기사는 다른 사람에게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무소 등의 설치) ① 속기사는 제3조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② 속기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속기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합동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사무소의 명칭 등) ① 속기사는 그 사무소의 종류별로 사무소의 명칭 중에 속기사사무소 또는 속기사합동사무소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속기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속기사가 아닌 사람은 속기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속기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니면 속기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4조(폐업신고) ① 속기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직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28조에 따른 대한속기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한 속기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속기법인) ① 속기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이하 “속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속기법인의 사원은 2명 이상의 속기사로 구성한다.

③ 속기법인은 사원이 아닌 속기사(이하 “소속 속기사”라 한다)를 고용할 수 있다.

제16조(속기법인의 설립절차 등) ① 속기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원이 될 속기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의 성명과 주소
5.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속기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登記하여야 한다.

④ 속기법인은 그 주사무소에서 설립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7조(속기법인의 사무소) ① 속기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속기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속기법인의 사원과 소속 속기사는 그 속기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18조(속기법인의 업무집행방법) ① 속기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임한 업무마다 그 업무를 담당할 속기사(이하 “담당속기사”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속기사가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속기법인을 대표한다.

③ 속기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속기록에는 법인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속기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19조(속기법인의 해산) ① 속기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속기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속기법인 인가 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속기법인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원의 수(數)에 미치지 못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의 인가를 받은 경우

제21조(경업의 금지) ① 속기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 속기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속기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속기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 속기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속기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 속기사이었던 사람은 그 속기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속기법인의 담당속기사로서 수행하고 있었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속기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속기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속기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엄수 등) ① 속기사 또는 속기사이었던 사람은 정당한 사

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이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 또는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속기사는 속기록을 고의적으로 왜곡·변조하거나 다른 의미로 수정하지 못하며, 공정하게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속기사는 속기록에 주관적인 해석을 추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기록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기록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속기사는 속기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의뢰받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준용규정) 속기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속기사의 권리·의무

제25조(보수) ① 속기사는 업무에 관하여 그 의뢰인으로부터 정당한 보수를 받는다.

② 속기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뢰인이나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③ 속기사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8조에 따른 대한속기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속기사 서명의무 등) ① 속기사는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작성하거나 보정한 속기록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진정성을 확

인한 후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명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속기록의 수정 등) 속기사가 속기록 작성 후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속기록 수정 또는 정정이 필요한 사유를 기재한 후 서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제5장 대한속기사회

제28조(대한속기사회 설립 등) ① 속기사의 품위향상과 속기제도 등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속기사회(이하 “속기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속기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속기사회는 정관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속기사회의 설립·운영 및 설립인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속기사회의 가입 의무) 제6조에 따라 속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속기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0조(속기사회의 정관) ① 속기사회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자와 그 밖의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의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속기사의 품위유지와 제도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탈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회계 및 회비부담 등에 관한 사항
8. 자산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속기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민법」의 준용) 속기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지도·감독

제32조(속기사 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공지능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능력 있는 속기사 인력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훈련 실시를 속기사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능력이 있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과정, 과목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속기사의 정기보수교육) ① 제3조에 따라 속기사 업무에 종사하는 속기사는 5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보수교육을 속기사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능력이 있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 등 새로운 속기제도의 습득, 윤리 강화 등 속기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에 관한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3항에 따른 수시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를 속기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자격정지 및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속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속기사의 신뢰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속기사가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속기사가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속기록에 대리하여 서명하는 경우 또는 서명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서명한 경우

3. 제27조를 위반하여 속기사가 서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속기록을 수정 또는 변경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속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속기사제도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기간 중에 3회 이상 무단으로 속기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속기업무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기밀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등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속기록을 고의로 왜곡·변조하거나 다른 의미로 수정한 경우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6. 제38조에 따라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속기사회가 속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속기사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5조(수수료) ① 제6조에 따른 속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32조제2항에 따라 속기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속기사회,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각종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속기 제도개선 및 속기사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속기사회에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속기사가 속기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속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7조(위임)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속기사회에 위임한다.

제8장 벌칙

제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속기사 업무를 업(業)으로 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업무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행위를 한 자

자

3.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명된 공식 속기록을 정당한 이유없이 폐기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밀을 외부에 공개한 자

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왜곡·변조하거나 다른 의미로 수정한 자

3.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관적인 해석을 추가하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기록·수정한 자

제39조(양벌규정) 속기사 또는 속기법인의 소속 속기사가 속기업무와 관련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속기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속기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속기, 속기사, 대한속기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속기사(속기법인을 포함한다)가 속기사

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속기사업무에 종사한 자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속기록에 서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실로 속기록에 서명하지 아니한 자
2. 속기사가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보정 없이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명한 자
3.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이수를 거부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속기사회의 설립에 따른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이하 “속기협회”라 한다)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속기사회로 본다. 이 경우 속기협회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속기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속기사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속기협회의 명의를 속기사회의 명의로 본다.

③ 속기사회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속기협회가 행한 행위는 속기사회가 행한 행위로, 속기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속기사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속기협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속기사회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속기협회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속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제4조(속기업무 운영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속기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속기사(속기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에 따른 속기업무를 운영하는 속기사로 본다. 다만,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